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편집자 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1.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안 제3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이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등으로 규정함.

###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 확대 (안 제83조)

-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2) 퇴직공제 가입대상과 관련한 분쟁 발생을 줄임과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u>도급금액산출내역서</u>에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p> <p>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u>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u></p> <p>② ~ ④ (생략)</p> <p>&lt;신설&gt;</p> <p>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 <u>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말한다.</u></p> <p>②·③ (생략)</p> <p>&lt;신설&gt;</p>	<p>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_____ _____ _____도 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_____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_____.</p> <p>제34조의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lt;삭제&gt;</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4(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li> <li>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li> <li>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li> <li>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제34조의5(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lt;삭제&gt;</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6(부당특약의 유형)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2조에 따라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li> </ol>

현행	개정안
<p>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li> <li>3.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li> </ol>	<p>2. 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 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특약</p> <p>3.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p> <p>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_____</p> <p>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_____ 상생협력관계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_____ 상생협력 _____</li> <li>3. _____ 상생협력 _____</li> </ol>
<p>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li> <li>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li> <li>2의2.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li> <li>3. (생략)</li> <li>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li> <li>5. 6. (생략)</li> </ol> <p>&lt;신설&gt;</p> <p>②·③ (생략)</p>	<p>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_____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_____</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_____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_____ 해당 _____ 억원 _____</li> <li>2. _____ 3억원 _____</li> <li>2의2. _____ 50퍼센트 _____ 3억원 _____</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_____ 3억원 _____</li> <li>5. 6. (현행과 같음)</li> <li>7.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li> </ol>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 및 제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④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4호·제5호·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3호·제5호 및 제7호</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⑤·⑥ (현행과 같음)</p>



**무한지식**

**죽어서도 머리카락과 손톱은 자란다구?**

당신이 생각하는 공포영화 속 귀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공포영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긴 머리와 긴 손톱 그리고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소복이다. 첨단 시대를 살아도 그런 이미지는 예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함이 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영화에서 귀신들은 왜 머리와 손톱을 길게 키르고 나타나는 것일까?

사람은 죽은 뒤에서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란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머리와 손톱이 자라기 때문에 귀신은 늘 그렇게 복장을 불량한 상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밭을 딛고 사는 땅 밑은 온통 머리카락과 손톱으로 뒤덮여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매장됐으니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죽어서 땅 속에 묻혀도 어느 정도시간이 흐를 때까지는 손톱과 머리카락이 계속 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망과 함께 신체 기능이 모두 정지되며, 머리카락이나 손톱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사람이 죽으면 피부가 건

조해지고 쪼그라들게 된다. 그래서 피부 속에 감춰졌던 손톱과 머리카락이 드러나서 더 길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들이 자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귀신들은 흔히 죽음에 얽힌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화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곤 한다. 마치 죽은 뒤에 피부 속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드러나듯이 말이다.

우리 속담에는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머리카락으로 신을 삼아 바친다’라는 말이 있다.

옛날부터 선조들은 사람이 가는 길에 동행하는 짐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그 때문에 짐신을 삼아준다는 것, 그것도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엮어서 신을 삼아준다는 것은 떠나는 사람의 앞길에 안녕을 빌며 편히 가시라는 뜻이다. 저승 가는 길이 편안하라고 예부터 죽은 사람의 집 대문 앞에 얼마간의 돈과 짐신을 놓아두는 풍습도 있었다.

실제로 몇 년 전 안동 지방에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삼아준 것으로 보이는 짐신 한 켤레가 발견되었는데, 그 짐신의 새끼줄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무 걱정 말고 편히 가세요’라는 의미로 남편의 무덤에 넣어준 것이라고 한다.

- 「정재승의 도전 무한도전」 중에서